

등록번호	총무과-2603
등록일자	2015.1.21.
결재일자	2015.1.21.
공개구분	부분공개

주무관	인사팀장	총무과장	행정관리국장	부구청장	구청장
임소영	남종운	유현모	이제영	김찬곤	01/21 최창식
협조	주무관 의회법제팀장 기획예산과장	권명주 문성수 장형태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 계획

2014년도 관리운영직군 전직시험 합격자의 전직임용 및 통합 건강증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재할·운동 분야의 전문 임기제 공무원 채용을 위해 관련 규칙을 개정하고자 함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 계획



행정관리국
총 무 과

I 개 정 근 거

- 2014년 관리운영직군 및 전담직위 공무원 전직시험 합격자 명단 통보 및 임용절차 안내 [서울시 인사과-30046(2014.11.28.)]
- 일반임기제 지방공무원(의사, 물리치료사) 신규채용 계획 [구청장방침 의약과-642(2015.01.09)]

II 개 정 이 유

- 관리운영직군 전직임용을 위한 전직예정 직렬 정원 증원
 - 2014년도 관리운영직군 전직시험 합격자의 전직 임용을 위해 전직예정 직렬 정원 증원
 - 관리운영직군 전직시험 합격자 현황

구분	계	사무운영				기계운영			전기운영			
		소계	6급	7급	8급	소계	6급	7급	소계	7급	8급	9급
응시인원	37	20	1	17	2	6	1	5	11	8	2	1
합격인원	18	9	1	7	1	5	1	4	4	3	1	-
전직인원	18	9	1	7	1	5	1	4	4	3	1	-

- 전직임용에 따른 정원 증원 현황

계	행정				사회 복지	기계			전기		
	소계	6급	7급	8급	7급	소계	6급	7급	소계	7급	8급
18	8	1	6	1	1	5	1	4	4	3	1

□ **통합건강증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의료기술 전문요원(일반기제 7급) 직류 변경(운동처방 → 물리치료)**

- 재활·운동 분야 전반에 걸친 직무수행이 가능한 전문요원 채용을 위해 임기제 공무원 직류 변경(운동처방 → 물리치료)
- 직무범위 및 채용 자격기준에 맞는 유능한 인재 선발하여 보건의료서비스 수준제고

Ⅲ 주 요 내 용

□ **관리운영직군 전직임용을 위한 직렬 간 정원조정**

- 전직대상 관리운영직렬 정원 감소정하고 전직예정 직렬 정원 증원
 - [감축] 사무운영 9, 기계운영 5, 전기운영 4 → [증원] 행정 8, 사회복지 1, 기계 5, 전기 4
- 사무운영(워드)직렬 전직에 따른 정원 조정

감 축				증 원			
직렬 · 직급	정원			직렬 · 직급	정원		
	현행	개정	증감		현행	개정	증감
계			△9	계			+9
사무운영6급(워드)	1	0	△1	행 정 6 급	149	150	+1
사무운영7급(워드)	2	1	△1	행 정 7 급	198	204	+6
사무운영9급(워드)	30	23	△7	행 정 8 급	185	186	+1
				사회복지7급	14	15	+1

○ 기계운영직렬 전직에 따른 정원 조정

감 축				증 원			
직렬 · 직급	정원			직렬 · 직급	정원		
	현행	개정	증감		현행	개정	증감
계			△5	계			+5
기계운영6급	1	0	△1	기 계 6 급	1	2	+1
기계운영7급	3	1	△2	기 계 7 급	2	4	+2
기계운영9급	6	4	△2	기 계 9 급	2	4	+2

○ 전기운영직렬 전직에 따른 정원 조정

감 축				증 원			
직렬 · 직급	정원			직렬 · 직급	정원		
	현행	개정	증감		현행	개정	증감
계			△4	계			+4
전기운영7급	4	3	△1	전 기 7 급	3	4	+1
전기운영8급	4	3	△1	전 기 8 급	4	5	+1
전기운영9급	10	8	△2	전 기 9 급	3	5	+2

□ **의료기술 일반임기제공무원 직렬 조정**

- 임기제 의료기술(운동처방) 7급 1명 → 임기제 의료기술(물리치료) 7급 1명

현 행		개 정 안	
직렬 · 직급	정원	직렬 · 직급	정원
계	1	계	1
임기제의료기술(운동처방) 7급	1	임기제 의료기술(물리치료) 7급	1

Ⅳ 추 진 일 정

- **규칙 개정 방침 : 2015. 1월**
- **입법예고 : 2015. 1월 중 (5일간)**

※ 입법예고기간 단축 근거 : 중구 법제사무 처리 규칙 제4조제5항

- 조례·규칙 심의회 개최 : 2015. 1. 29. (예정)
- 공 포 : 2015. 2. 4. (예정)

V 참 고 사 항

- 예산조치 : 비예산
- 합 의 : 합의 불필요
- 규제심사 : 해당
- 기 타 : 개정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별첨

서울특별시 중구 규칙 제 호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의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에 해당하는 초과 현원은 초과현원 해소 시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별표] 정원관리기관별 직급·직렬별 정원규정 (제2조 관련)

직렬별	기관별	총계	본청	의회사무과	직속기관	등
총 계		1,211	867	25	103	216
정무직 계		1	1			
구 청 장		1	1			
일반직 계		1,203	863	21	103	216
3급 소계		1	1			
행정		1	1			
4급 소계		6	5		1	
서기관		3	3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2	2			
기술서기관(보건·의무)		1			1	
5급 소계		57	30	1	11	15
행정		35	20	1		14
시설(토목1, 건축1, 지적1)		3	3			
행정·사회복지		2	1			1
행정·복지		1	1			
행정·보건		2			2	
행정·시설		4	4			
의무·약무		1			1	
보건·의료기술·의무·간호		1			1	
임기제 의무(의사)		7			7	
행정 또는 임기제 행정(감사)		1	1			
6급 소계		229	171	3	20	35
행정		150	109	3	8	30
세무		14	14			
사회복지		6	4			2
전산		1	1			
방호		1	1			
공업(기계3, 전기2, 화공1)		5	5			
복지		3	3			
의료기술		1			1	
약무		2			2	
간호		5			5	
환경		1	1			
시설(토목6, 건축6, 지적3)		15	15			
시설(토목·건축)		1	1			
행정·세무		1	1			
행정·사회복지		3				3
행정·방송통신		1	1			
행정·전산·방송통신		1	1			
행정·보건		1	1			
행정·시설(행정4, 토목1, 건축1)		6	6			
보건·의료기술		1			1	
공업(화공)·보건·환경		1	1			
위생		1	1			
운전		3	3			
전기운영(전기)		1	1			
-기계운영(기계)		0	0			
-사무운영(워드)		0	0			
임기제 보건진료(의사)		3			3	
임기제 시설(디자인)		1	1			

직렬별	기관별	총계	본청	의회사무과	직속기관	등
7급 소계		360	274	9	30	47
행정		204	150	6	9	39
세무		21	21			
사회복지		15	7		1	7
전산		3	3			
속기		3		3		
방호		6	6			
공업(기계4, 전기4, 화공3)		11	11			
복지		3	3			
수의		1	1			
보건		7	3		4	
식품위생		1	1			
의료기술		4			4	
환경		1	1			
약무		2			2	
간호		9			9	
시설(토목14, 건축11, 지적6)		31	31			
방송통신		1	1			
위생		3	3			
시설관리		9	9			
운전		8	8			
전기운영(전기)		3	3			
기계운영(기계1, 영사1)		2	2			
농림운영(원예)		2	2			
사무운영(워드)		1				1
임기제 시설(건축)		1	1			
임기제 시설(도시계획)		1	1			
임기제 전산(전산디자인)		1	1			
임기제 시설(교통)		2	2			
임기제 시설(디자인)		1	1			
임기제 의료기술(물리치료)		1			1	
임기제 행정(홍보)		1	1			
임기제 행정(평생교육)		1	1			
8급 소계		345	255	2	28	60
행정		186	133	2	5	46
세무		32	32			
사회복지		13	4			9
전산		5	5			
방호		4	4			
공업(기계4, 전기5, 화공1)		10	10			
복지		4	4			
보건		5			5	
의료기술		5			5	
간호		13			13	
환경		2	2			
시설(토목18, 건축10, 지적6)		34	34			
방송통신		2	2			
위생		1	1			
시설관리		7	7			
운전		6	6			
전기운영(전기)		3	3			
기계운영(기계)		2	2			
사무운영(워드5, 전산1)		6	1			5
임기제 시설(교통)		1	1			
임기제 전산(전산)		1	1			
임기제 행정(언론홍보)		1	1			
임기제 행정(영사)		1	1			
임기제 행정(기록물관리)		1	1			

신·구조문 대비표

직렬별	기관별	총계	본청	의회사무과	직속기관	등
9급 소계		203	125	6	13	59
행정		50	20	2		28
세무		6	6			
사회복지		14	11			3
전산		2	1		1	
방호		13	12	1		
공업(기계4, 전기5)		9	9			
녹지		2	2			
보건		2			2	
의료기술		2			2	
환경		1	1			
시설(토목7, 건축3, 지적4)		14	14			
방송통신		1	1			
위생		4	4			
운전		44	21	2	6	15
전기운영(전기)		8	8			
기계운영(기계)		4	2	1		1
사무운영(워드)		23	10		1	12
임기제 식품위생(영양사)		1			1	
임기제 공업(전기관리)		1	1			
임기제 행정(사진촬영)		1	1			
임기제 녹지(조경녹지)		1	1			
전문경력관 소계		2	2			
나군		2	2			
화생방담당		2	2			
별정직 계		7	3	4		
5급상당 소계		3	1	2		
비서		1	1			
전문위원		2		2		
6급상당 소계		1	1			
비서		1	1			
7급상당 소계		3	1	2		
비서		3	1	2		

현행						개정안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별표] 정원관리기관별 직급·직렬별 정원규정 (제2조관련)						[별표] 정원관리기관별 직급·직렬별 정원규정 (제2조관련)							
직렬별	기관별	총계	본청	의회 사무과	직속 기관	등	직렬별	기관별	총계	본청	의회 사무과	직속 기관	등
총 계		1,211	867	25	103	216	총 계		1,211	867	25	103	216
경무직 계		1	1				경무직 계		1	1			
구청장		1	1				구청장		1	1			
일반직 계		1,203	863	21	103	216	일반직 계		1,203	863	21	103	216
3급 소계		1	1				3급 소계		1	1			
행정		1	1				행정		1	1			
4급 소계		6	5		1		4급 소계		6	5		1	
서기관		3	3				서기관		3	3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2	2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2	2			
기술서기관(보건·의무)		1			1		기술서기관(보건·의무)		1			1	
5급 소계		57	30	1	11	15	5급 소계		57	30	1	11	15
행정		35	20	1		14	행정		35	20	1		14
시설(토목1, 건축1, 지적1)		3	3				시설(토목1, 건축1, 지적1)		3	3			
행정·사회복지		2	1			1	행정·사회복지		2	1			1
행정·녹지		1	1				행정·녹지		1	1			
행정·보건		2			2		행정·보건		2			2	
행정·시설		4	4				행정·시설		4	4			
의무·약무		1			1		의무·약무		1			1	
보건·의료기술·의무·간호		1			1		보건·의료기술·의무·간호		1			1	
임기제 의무(의사)		7			7		임기제 의무(의사)		7			7	
행정 또는 임기제 행정(감사)		1	1				행정 또는 임기제 행정(감사)		1	1			
6급 소계		229	171	3	20	35	6급 소계		229	171	3	20	35
행정		149	108	3	8	30	행정		150	109	3	8	30
세무		14	14				세무		14	14			
사회복지		6	4			2	사회복지		6	4			2
전산		1	1				전산		1	1			
방호		1	1				방호		1	1			
공업(기계1, 전기2, 화공1)		4	4				공업(기계2, 전기2, 화공1)		5	5			
녹지		3	3				녹지		3	3			
의료기술		1			1		의료기술		1			1	
약무		2			2		약무		2			2	
간호		5			5		간호		5			5	
환경		1	1				환경		1	1			
시설(토목6, 건축6, 지적3)		15	15				시설(토목6, 건축6, 지적3)		15	15			
시설(토목·건축)		1	1				시설(토목·건축)		1	1			
행정·세무		1	1				행정·세무		1	1			
행정·사회복지		3				3	행정·사회복지		3				3
행정·방송통신		1	1				행정·방송통신		1	1			
행정·전산·방송통신		1	1				행정·전산·방송통신		1	1			
행정·보건		1	1				행정·보건		1	1			
행정·시설(행정4, 토목1, 건축1)		6	6				행정·시설(행정4, 토목1, 건축1)		6	6			
보건·의료기술		1			1		보건·의료기술		1			1	
공업(화공)·보건·환경		1	1				공업(화공)·보건·환경		1	1			
위생		1	1				위생		1	1			
운전		3	3				운전		3	3			
전기운영(전기)		1	1				전기운영(전기)		1	1			
기계운영(기계)		1	1				기계운영(기계)		0	0			
사무운영(워드)		1	1				사무운영(워드)		0	0			
임기제 보건진료(의사)		3			3		임기제 보건진료(의사)		3			3	
임기제 시설(디자인)		1	1				임기제 시설(디자인)		1	1			

현행						개정안							
직렬별	기관별	총계	본청	의회사무과	지속기관	동	직렬별	기관별	총계	본청	의회사무과	지속기관	동
7급 소개		354	270	9	30	45	7급 소개		360	274	9	30	47
행정		198	146	6	9	37	행정		204	150	6	9	39
세무		21	21				세무		21	21			
사회복지		14	7		1	6	사회복지		15	7		1	7
전산		3	3				전산		3	3			
속기		3		3			속기		3		3		
방호		6	6				방호		6	6			
공업(기계2, 전기3, 화공3)		8	8				공업(기계4, 전기4, 화공3)		11	11			
녹지		3	3				녹지		3	3			
수의		1	1				수의		1	1			
보건		7	3		4		보건		7	3		4	
식품위생		1	1				식품위생		1	1			
의료기술		4			4		의료기술		4			4	
환경		1	1				환경		1	1			
약무		2			2		약무		2			2	
간호		9			9		간호		9			9	
시설(토목14, 건축11, 지적6)		31	31				시설(토목14, 건축11, 지적6)		31	31			
방송통신		1	1				방송통신		1	1			
위생		3	3				위생		3	3			
시설관리		9	9				시설관리		9	9			
운전		8	8				운전		8	8			
전기운영(전기)		4	4				전기운영(전기)		3	3			
기계운영(기계3, 영사1)		4	4				기계운영(기계1, 영사1)		2	2			
농림운영(원예)		2	2				농림운영(원예)		2	2			
사무운영(워드)		2	0			2	사무운영(워드)		1				1
임기제 시설(건축)		1	1				임기제 시설(건축)		1	1			
임기제 시설(도시계획)		1	1				임기제 시설(도시계획)		1	1			
임기제 전산(전산디자인)		1	1				임기제 전산(전산디자인)		1	1			
임기제 시설(교통)		2	2				임기제 시설(교통)		2	2			
임기제 시설(디자인)		1	1				임기제 시설(디자인)		1	1			
임기제 의료기술(운동처방)		1			1		임기제 의료기술(물리치료)		1			1	
임기제 행정(홍보)		1	1				임기제 행정(홍보)		1	1			
임기제 행정(평생교육)		1	1				임기제 행정(평생교육)		1	1			
8급 소개		344	255	2	28	59	8급 소개		345	255	2	28	60
행정		185	133	2	5	45	행정		186	133	2	5	46
세무		32	32				세무		32	32			
사회복지		13	4			9	사회복지		13	4			9
전산		5	5				전산		5	5			
방호		4	4				방호		4	4			
공업(기계4, 전기4, 화공1)		9	9				공업(기계4, 전기5, 화공1)		10	10			
녹지		4	4				녹지		4	4			
보건		5			5		보건		5			5	
의료기술		5			5		의료기술		5			5	
간호		13			13		간호		13			13	
환경		2	2				환경		2	2			
시설(토목18, 건축10, 지적6)		34	34				시설(토목18, 건축10, 지적6)		34	34			
방송통신		2	2				방송통신		2	2			
위생		1	1				위생		1	1			
시설관리		7	7				시설관리		7	7			
운전		6	6				운전		6	6			
전기운영(전기)		4	4				전기운영(전기)		3	3			
기계운영(기계)		2	2				기계운영(기계)		2	2			
사무운영(워드5, 전산1)		6	1			5	사무운영(워드5, 전산1)		6	1			5
임기제 시설(교통)		1	1				임기제 시설(교통)		1	1			
임기제 전산(전산)		1	1				임기제 전산(전산)		1	1			
임기제 행정(언론홍보)		1	1				임기제 행정(언론홍보)		1	1			
임기제 행정(영사)		1	1				임기제 행정(영사)		1	1			
임기제 행정(기록물관리)		1	1				임기제 행정(기록물관리)		1	1			

현행						개정안							
직렬별	기관별	총계	본청	의회사무과	지속기관	동	직렬별	기관별	총계	본청	의회사무과	지속기관	동
9급 소개		210	129	6	13	62	9급 소개		203	125	6	13	59
행정		50	20	2		28	행정		50	20	2		28
세무		6	6				세무		6	6			
사회복지		14	11			3	사회복지		14	11			3
전산		2	1		1		전산		2	1		1	
방호		13	12	1			방호		13	12	1		
공업(기계7, 전기3)		5	5				공업(기계4, 전기5)		9	9			
녹지		2	2				녹지		2	2			
보건		2			2		보건		2			2	
의료기술		2			2		의료기술		2			2	
환경		1	1				환경		1	1			
시설(토목7, 건축3, 지적4)		14	14				시설(토목7, 건축3, 지적4)		14	14			
방송통신		1	1				방송통신		1	1			
위생		4	4				위생		4	4			
운전		44	21	2	6	15	운전		44	21	2	6	15
전기운영(전기)		10	10				전기운영(전기)		8	8			
기계운영(기계)		6	4	1		1	기계운영(기계)		4	2	1		1
사무운영(워드)		30	14		1	15	사무운영(워드)		23	10		1	12
임기제 식품위생(영양사)		1			1		임기제 식품위생(영양사)		1			1	
임기제 공업(전기관리)		1	1				임기제 공업(전기관리)		1	1			
임기제 행정(사진촬영)		1	1				임기제 행정(사진촬영)		1	1			
임기제 녹지(조경녹지)		1	1				임기제 녹지(조경녹지)		1	1			
전문경력관 소개		2	2				전문경력관 소개		2	2			
나군		2	2				나군		2	2			
화생방담당		2	2				화생방담당		2	2			
별정직 계		7	3	4			별정직 계		7	3	4		
5급상당 소개		3	1	2			5급상당 소개		3	1	2		
비서		1	1				비서		1	1			
전문위원		2		2			전문위원		2		2		
6급상당 소개		1	1				6급상당 소개		1	1			
비서		1	1				비서		1	1			
7급상당 소개		3	1	2			7급상당 소개		3	1	2		
비서		3	1	2			비서		3	1	2		

관 련 법 령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 (정원의 관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직간의 균형있고 합리적인 정원 관리를 위하여 지방공무원 종류별로 정원책정기준에 따라 정원을 책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무원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08.7.3>

제29조 (직급별 정원)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합리적인 직급 체계를 이룰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08.7.3>

제30조 (정원의 규정)

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 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시·도의 5급 이하(시·군·구는 6급 이하) 직급별 정원은 조례로 그 총수만 정하고, 그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의 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8.7.3>

③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 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37조(기구와 정원규칙의 제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구와 정원에 관한 규칙을 제정·개정하거나 폐지한 경우에는 이를 공포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8조 (기구와 정원에 관한 조례·규칙의 입법예고)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구나 정원의 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조례·규칙의 제정·개정안을 마련한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추가적인 경비가 소요되지 아니하거나 기구·정원의 감축 또는 하위직으로의 직급 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 (추가적인 경비가 소요되지 아니하지만 상위직으로의 직급 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입법예고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8.7.3>